

2. 通信市場 開放의 讓許案 提出

- (WTO 基本 通信 協商) 本 協商의 重點 課題는 外國人 投資의 自由化 措置와 競爭 促進的인 規制政策의 確立에 있음
- (韓國의 讓許案 內容) 98년부터 有線 通信 事業에 對한 外國인 투자 및 동일인 지분을 총지분의 33%까지 허용하고, 事業者數, 外國人 任員數, 回線 再販賣 등과 相關한 制限을 대부분 廢止함. 한편 通信委員會로 하여금 公正 경쟁을 감독함
- (讓許案 評價) 外國人 投資 開放은 협상 주도국들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通信委員會를 통한 規制는 獨立性과 公正性에 對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
- (向後 協商 課題) 향후에는 先進國과의 雙務協商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美國은 전반적인 開放 擴大 및 실질적인 競爭 保障을, 유럽은 PCS 사업에 對한 政府의 單一 規格 選定을 문제삼을 것임

○ WTO 基本 通信 協商

외국인의 투자 자유
화와 자유 경쟁을
보장하려는 WTO
통신 협상 진행

- 이번 협상은 96년 4월까지 타결한다는 계획으로 外國人 投資 自由化 措置와 自由 競爭을 보장하는 規制 政策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참여 국가는 31개국 45개 정부이며, 10여개 개국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

○ 韓國의 讓許 內容

구 분	양허 내용과 개방 시기
외국인 지분 제한	유무선 33%, 단 한국통신은 20%,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식 취득은 동일인 3% 합계 15%로 제한(98년)
동일인 제한	유무선 33%(98년)
대주주 제한	현행대로 금지
임원수 제한	폐지(98년)
사업자수 제한	주파수 여유가 있는 한 제약 없음
회선 재판매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전면 자유화(98년), 전용망과 공중망의 접속을 통한 음성통신 서비스는 2001년부터 자유화
공정 경쟁 제도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 가능

○ 讓許案의 評價

전반적인 개방 수준 협상 주도국들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달

- 投資 開放의 전반적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지분 소유 제한은 주요국에서는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했던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대주주 금지 조항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음
 - 소규모 투자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회선 재 판매를 통한 음성 통신 사업의 2001년 개방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통신위원회를 통한 규제활동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유발 가능

- 通信委員會를 통한 규제 업무는 규제 기관의 獨立性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
 - WTO 통신협상에서는 독립 기관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과 일관적인 경쟁 정책에 대한 시비를 부를 수 있음

○ 向後 協商 課題

미국 중심으로 한 쌍무 협상이 중심

- 96년 부터는 開放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雙務協商이 주로 이루어 질 것임
 - 미국은 자국 수준의 투자 개방과 실질적인 내국인 대우 및 공정 경쟁의 보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
 - 지난 2월에는 자국의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 국가들의 개방 수준을 평가하여 허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에 대해 이를 통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과 다른 단일 기술 표준의 제정에 이의 제기 예상

- EU는 開放 水準 보다는 우선 技術的인 규제의 철폐를 요구할 것임
 - 특히 한국의 양허안에는 PCS의 접속 기술을 CDMA로 단일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럽은 TDMA 기술에 앞서 있으므로 한국의 단일화 방안을 문제삼을 것임 (정 반 석)